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1891
----------	------

2024년 6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규남 의원 외 27명

나. 제출일자 : 2024년 5월 27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라. 상정결과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6월 26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코로나19 이후 대외적인 관광수요가 종전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를 넘어 해외 현지에서의 서울 관광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서울관광재단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실제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은 베이징, 타이페이 등에 해외지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하와이관광청, 로스앤젤레스관광청 등 해외 도시 역시 타국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자국 관광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 유치를 통한 서울시 위상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 설립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함.

3. 주요내용

- 가. 재단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3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조의2(해외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나. 해외지사·사무소 설립의 타당성

(1) 서울 관광 환경 분석

-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2020년 전세계 국제관광객은 1990년대로 회귀한 수준인 전년대비 1/10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국제관광시장이 초기 관광 교류 시기로 되돌아가면서 방한시장도 크게 위축됨.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유튜브, OTT와 같은 비대면 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아졌으며 한류에 대한 관심 증가가 서울 관광 수요로 연결되는 추세임.
- 서울시는 서울관광의 근본적인 문제가 ‘서울관광 생태계 붕괴, 저질·덤핑 관광’에 대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관광생태계는 단순히 서울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해외 현지 랜드사 및 여행업계 등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현지 관광기업과의 지속적인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급선무일 것으로 사료됨.

(2) 해외지사 필요성

- 서울관광재단 해외지사 설립 타당성 분석 보고서(2022.10.)에 따르면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대응하여 현지 관광 마케팅 성과에 대한 자정 및 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관광산업, 인바운드 관광객은 물론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위해 관광재단 해외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현재 재단은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해외기관,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직접 또는 대행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해외 업무 추진 시 제약이 발생함.
 - 특히 서울관광재단의 해외 마케팅 사업은 해외 행사의 현지 준비 업무를 대대행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종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인해, 행사당 소요 예산이 상승함에 따라 연간 예산 범위 내 참가가능한 행사의 수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음.
 - 따라서 해외현지 사무소를 통한 해외현지 마케팅이 추진된다면 불필요한 수수료를 절감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여 마케팅 성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3) 해외지사 조직 현황

-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1969년 도쿄지사를 시작으로 일본 지역 3개 지사, 중화권 지역 9개 지사, 아시아·중동 11개 지사, 구미주 지역 9개 지사 등 총 32개 지사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음.

<해외지사 단계별 진출 현황>

단계	단계별 진출 도시	비고
60년대	도쿄(1969)	외래관광객 최다 지역 우선 진출
70년대	로스앤젤레스(1974), 프랑크푸르트(1974), 뉴욕(1975), 오사카(1975), 싱가포르(1977), 파리(1977), 시드니(1979), 시카고(1979) · 타이베이(1980)	교포시장, 외래관광객 다수 방문지역, 동남아 2선 시장 개척 등
80년대	런던(1981), 홍콩(1987), 토론토(1990)	구미주 2선 시장 개척
90년대 중반	북경(1995)	중국 수교 이후 적극적 유치
90년대 중반 이후	후쿠오카, 상하이, 광저우, 선양, 청두, 시안, 우한, 방콕, 쿠알라룸푸르, 하노이, 자카르타, 뉴델리, 두바이, 마닐라, 이스탄불, 알마티,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세계 다변화 관광객 유치

- 한국관광공사는 공통적용 사업을 제외하고 전국단위의 홍보와 마케팅 사업이 다수 진행되어 서울관광에 집중된 홍보마케팅이 부족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 경상북도¹⁾, 제주도²⁾, 부산³⁾이 관광업무와 관련된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음.

1)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와 2018년 중국 북경사무소를 시작으로 2019년 3개소, 2020년 2개소, 2021년 5개소로 확대하여 운영 중임.

2) 1999년 중국 베이징 지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관광전문 인력 1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임.

3) 2017년 대만 타이베이 지사를 시작으로 오사카, 베이징, 방콕, 쿠알라룸푸르 등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관광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지 사무소는 한국관광공사 내 해외사무소 내 상주하는 방식으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 각 해외도시별 관광 트렌드와 소비 패턴 등의 차이가 있는 바,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현지 마케팅이 가능한 해외지사 도입에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시장성, 잠재력, 해외지사 운영 환경, 리스크 요소 등 후보 지역들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해외지사 진출 도시를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서울관광재단 해외 지사 설립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방한객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곳은 제외한 상태에서 관광 거리, 해당 국가의 잠재 성장률, 해외 관광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중국, 일본, 미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영국을 진출 대상 국가로 검토 중임.

(4) 향후 과제

- 해외지사 설립은 통상적으로 지점이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 ‘연락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하며, 해외사무소 개소를 위해서는 관련 해외 정부와 한국 주무 부처 간 설립에 대한 합의 및 비준서⁴⁾ 등이 필요함.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해외지사 및 사무소를 설립할 근거를 견고히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관광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중국, 미국은 법인 설립이 필수이며 일본은 법인 설립이 필수가 아님.

6.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7. 토론요지 : 없음.
8.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10. 수정안의 요지 : 없음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박지혜(2180-8115)
------	----------------	-------	----------------

의안번호
1891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규남	2024.5.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 코로나19 이후 대외적인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 현지에서의 서울 관광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 국내에서는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등 베이징, 타이베이 등에 해외 지사를 설립·운영, 해외에서는 하와이관광청, 로스앤젤레스관광청 등이 해외 지사를 운영하면서 자국 관광홍보 등을 지원함 ○ 재단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3조의 2 신설)				
추진경과					
부 서 검 토 의 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K-pop, 드라마, 음식 등 한류 문화의 글로벌 확산에 발맞춰 현지 마케팅 및 여행사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해외에 거점을 둔 전담 조직이 필요 ○ 따라서, 서울관광재단 정관(제3조)에만 규정되어 있는 해외지사·사무소의 설립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발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 서울관광재단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 설립 추진 시 출연금 증액 필요 ※ '23년 재단 해외지사 설립관련 요청예산액 : 12억원(말레이시아, 태국)				
대응방안					
상 임 위 처 리 결 과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 후 계 획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팀장	이재화(☎02-2133-2807)	담당	노혜정(☎02-2133-2811)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남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891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김규남, 강석주, 김경훈,
김길영,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유만희, 유정인,
이상욱, 이숙자, 장태용,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28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코로나19 이후 대외적인 관광수요가 종전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를 넘어 해외 현지에서의 서울 관광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서울관광재단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실제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은 베이징, 타이페이 등에 해외지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하와이관광청, 로스앤젤레스관광청 등 해외 도시 역시 타국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자국 관광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 유치를 통한 서울시 위상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 설립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함.

2. 주요내용

- 가. 재단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3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해외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2(해외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 재단은 업무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 사 또는 사무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해외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
 -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 설립 및 운영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관광재단 해외지사 설립 및 운영 비용(안 제3조의2)

나. 전제

- (해외지사) 2개소의 해외지사를 설립하고 각 지사별 총 4명¹⁾ 근무를 전제
- (인 건 비)²⁾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2,412천원, 퇴직급여 13,264천원으로 매년 소요됨을 전제
- (물 건 비) ① 해외지사 설립비용(사무실 조성 및 인테리어)은 1차년도만 소요됨을 전제
⇒ 180,000천원으로 전제
- ② 해외지사 운영비용은 매년 소요됨을 전제
⇒ 사무관리비 809,200천원, 공공운영비 32,116천원, 행사운영비 80,000천원, 회의비 6,000천원, 복리후생비 159,092천원, 국내여비 7,200천원, 국외업무여비 50,000천원, 교육훈련비 4,800천원으로 전제
- (발생기간) 2025년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소요됨을 전제
※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5년~2029년)

라. 방법

- 서울시 관광체육국 제공자료 활용, 서울관광재단 문의(각 약 30평, 4명 근무)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6,750,420천원**(연평균 1,350,084천원)
 - 1차년도 소요비용 = 1,494,084천원
 - 2차년도 이후 소요비용 = 1,314,084천원

1) 각 지사별 서울관광재단 직원 2명(팀장 1명, 실무자 1명) 및 현지직원 2명
2) 해외지사 현지직원 2명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해외지사 조성 비용(안 제3조의2)	180,000	-	-	-	-	180,000
	○ 해외지사 운영 비용(안 제3조의2)	1,314,084	1,314,084	1,314,084	1,314,084	1,314,084	6,570,420
	소계(a)	1,494,084	1,314,084	1,314,084	1,314,084	1,314,084	6,750,42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1,494,084	1,314,084	1,314,084	1,314,084	1,314,084	6,750,420

주 : 서울시 관광체육국 및 서울관광재단 제공자료 활용

4. 덧붙이는 의견

- 서울관광재단 해외사무소 설립 및 운영 비용은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2개국 사무소 소요비용만 추계하였으므로 향후 해외지사가 늘어날 경우³⁾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해외파견 직원 대체인력 비용추계(간접적 비용)⁴⁾
 - 해외지사 설립 및 운영 시 해외파견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간접적 비용인 대체인력비를 아래와 같이 추계함

① (대체인력) : 2급(팀장급) 2명, 4급(실무자) 2명 등 총 4명을 전제

② (인 건 비) : 2급 기준 연 89,000천원, 4급 기준 연 62,000천원으로 전제⁵⁾

· 총평균 = 1,510,000천원(연평균 302,000천원)

$$\text{산출방식} = \sum_{i=1}^5 (\text{대체인력 연평균 소요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5년~2029년)

· 대체인력 연평균 소요비용 = 302,000천원
= (팀장급 대체인력비 × 2명) + (실무자 대체인력비 × 2명)
= (89,000천원 × 2) + (62,000천원 × 2)
= 178,000천원 + 124,000천원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3)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은 전부 2개소 이상의 해외지사를 운영하는 중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시 향후 해외지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4) 간접적인 비용임에 따라 추계서 본문이 아닌 덧붙이는 의견에 참고자료로 제시함

5) 관련기관 제공자료로 성과금은 제외한 금액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관광재단 해외지사 설립 및 운영 비용(안 제3조의2)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6,750,420천원**(연평균 1,350,084천원)
 = ① 해외지사 사무실 조성 및 인테리어 비용 + ② 해외지사 운영비용
 = ① 180,000천원 + ② 6,570,420천원(1,314,084천원 × 5년)

① 해외지사 사무실 조성 및 인테리어 비용(1차년도만 발생)

$$\begin{aligned}
 &= \text{조성 및 인테리어 비용} \times 2\text{개소} \\
 &= 90,000\text{천원} \times 2 \\
 &= 180,000\text{천원}
 \end{aligned}$$

② 해외지사 운영비용(매년 발생)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용	산출근거	소요금액
인건비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103천원 × 2명) × 2개소	152,412
	퇴직급여	(3,316천원 × 2명) × 2개소	13,264
사무관리비	사무실 보증금 및 임차료 ⁶⁾	27,300천원 × 12개월	109,200
	사무집기비품 구입 및 임차	20,000천원 × 2개소	40,000
	해외 현지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300,000천원 × 2개소	600,000
	현지 여행사/OTA 협업 상품개발 및 홍보	30,000천원 × 2개소	60,000
공공운영비	전화료, 인터넷, 각종 세제 등	(1,338천원 × 2개소) × 12개월	32,116
행사운영비	홍보마케팅 행사 운영	40,000천원 × 2회	80,000
회의비	유관기관 업무 회의비	15천원 × 40명 × 10회	6,000
복리후생비	급식보조비	(140천원 × 4명) × 12개월	6,720
	주택지원비	(3,000천원 × 4명) × 12개월	144,000
	주재원 및 기간제근로자 보험	-	8,372
여비	국내여비	(300천원 × 2개소) × 12개월	7,200
	국외업무여비	(5,000천원 × 2개소) × 5회	50,000
교육훈련비	마케팅 직무역량 향상 교육비	(300천원 × 8명) × 2회	4,800
합 계			1,314,084

주 : 서울시 관광체육국 및 서울관광재단 제공자료 활용

6) 30평대 사무실 기준(관련기관 문의)